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	
 한국건강증진개발원				
배 포 일		2022. 6. 24. / (총 6매)		
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	과 장	이 선 영	전 화	044-202-2810
	담 당 자	이 예 지		044-202-2802
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증평가팀	팀 장	오 유 진		02-3781-3545
	담 당 자	유 혜 진		02-3781-3547

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(6.28)

-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7월 1일(금)부터 모집 -

□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(원장 조현장)은 「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」 설명회를 6월 28일(화) 16시에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(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)에서 개최하고 7월 1일(금)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□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, 제공목적, 기능 등에 따라 3개군*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.

* 1군(만성질환 관리형), 2군(생활습관 개선형), 3군(건강정보 제공형)

○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,

○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,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.

※ 참고 : [보도자료] “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” ('22.6.20.(월))

-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 확정 -

-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 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, 참여기업·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
-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28일(화)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*를 개최(대면·비대면 동시 진행)하고,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,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.
 - * (장소) 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(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)
 - * (일시) '22.6.28(화) 16:00 ~ 18:00
 - * (온라인 중계) <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Qzlp4dedKbE>
-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7일(월) 오후 2시까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(a_hcs@khealth.or.kr) 신청하면 된다.
 - * 별도의 신청 서식 없이 이메일에 참석기업명, 참석자 성명, 온라인 참석 또는 현장 참석 여부 기재하여 신청
- 보건복지부는 7월 1일(금)부터 7월 15일(금)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.
 -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.
 - * 인증 신청 결과는 개별기업에 통보 예정 (일정 별도 안내)
 -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·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.

< 신청서류 제출방법 >

- ◇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
 -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(www.khealth.or.kr) ▶알림마당 ▶공지사항
- ◇ 제출처 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증평가팀
 - 이메일 : a_hcs@khealth.or.kr
 - 우편 :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건강증진개발원
- ◇ 문의처 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증평가팀(02-3781-3545~3547)

-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“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, 기능,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(場)을 마련하는 것”이라며,
 - “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“미국·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히며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.

- <붙임> 1.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개요
2. 시범사업 설명회 포스터

붙임 1

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개요

1 인증 대상 :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

- 건강 유지·증진, 질병 사전예방·악화 방지 목적의 비의료적 상담, 교육, 훈련, 실천프로그램 작성·제공 등의 행위*

* 보건복지부의 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(’19.5)」에 따른 서비스 범위에 한정

2 인증 분류

- 서비스 제공목적, 기능,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 하여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 부여

분류	주요내용
1군 (만성질환 관리형)	• 의료인의 판단·지도·감독·의뢰에 따른 ①환자건강관리(건강상태 모니터링 등) ②교육·상담 지원(환자 교육·상담 제공 등) 서비스 등 * (예) 앱을 통해 ①자가측정기록 모니터링, ②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·주의·위험 등 안내, 생활습관지도,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※ 단,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범위 내에서 의뢰한 내용에 한함
2군 (생활습관 개선형)	• (질병 치료목적이 아닌) 생활습관,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, 비의료적 상담·조언·모니터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* (예) 심박수,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, 혈압·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동·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
3군 (건강정보 제공형)	•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·정보(질환 발생 비율, 질환의 증상 등),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·효능·부작용 등 단순 정보 안내 서비스 * (예)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(혈압, 혈당, 비만도 등)가 정상범위에 해당하는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알려주는 서비스

3 인증 신청 및 평가 절차

- (절차) ①각 군 인증신청 및 인증위원회에 인증 심사자료 제출
→ ②인증위원회 심의 → ③심의 결과(인증 여부, 인증 군) 회신
- (인증신청) 2회 실시 예정(’22.6, ’23.1)
 - (1차 인증접수) ’22.6~8 → (인증부여) ’22.8~
 - (2차 인증접수) ’23.1~’23.3 → (인증부여) ’23.3~

○ (인증 유효기간) 본 사업 시작('24.6 예정)까지

* 본사업 실시 시 시범사업으로 부여된 인증은 일괄 만료되며, 시범사업에서 인증받은 서비스는 본사업 도입에 따른 인증신청 시 가산점 부여 예정(인증심사과정은 동일)

- (평가) 개별 기업(서비스)의 인증 지속성 및 인증제 도입의 효과성·필요성 등 평가 예정

* 평가 결과 인증기준 미달 등의 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

※ 2차 인증접수, 본사업 도입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○ (인증 심사)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지표에 따라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·심사

- (인증지표) ①기업, ②서비스 내용, ③서비스 효과, ④이용자 편의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*하여 인증 부여

평가영역	평가 내용	배점	구분		
			1군	2군	3군
기업 현황	기업 정보	P/F	○	○	○
	서비스 정보	P/F	○	○	○
서비스 내용 (50점)	서비스 작용기전	10	○	○	○
	임상적 안전성	10	○	○	○
	소프트웨어 적합성	10	○	○	-
	정보 및 데이터의 안정성	10	○	○	-
	알고리즘 분석능력	10	○	-	-
	인적자원 관리체계	가점(5)	○	-	-
서비스 효과 (40점)	근거수준	10	○	○	○
	건강지식 전달정도	10	○	○	-
	건강행동 관리율	10	○	○	-
	건강행태 개선율	10	○	-	-
	콘텐츠 열람율	가점(5)	○	-	-
이용자 편의 (10점)	서비스 이해도	5	○	○	○
	서비스 만족도	5	○	○	○
	서비스 접근성	가점(3)	○	○	○
총점			100점	80점	40점
통과 기준 : 총점의 80%이상 획득			80점 이상	64점 이상	32점 이상

* 인증 통과기준: 총점의 80% 이상, 분야별 총점의 60% 이상인 경우 (절대평가)

** 하나의 심사 항목이라도 점수가 60%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총점과 무관하게 탈락

*** (결격사유) 최근 3년 내 기업의 부당한 활동(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) 존재, 서비스의 중대하자(의료법·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, 건강위해발생 등) 발생 시 인증 미부여/취소

○ (인증결과 통보) 신청 기업에 선정 결과 개별 통지(전자우편)

붙임 2

시범사업 설명회 포스터

비의료

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설명회

2022년 6월 28일(화) 16:00-18:00

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

